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0가합60327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1. ○○○

2. ○○○○

3. ●●●●

4. 주식회사 A

대표이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경목, 손태홍

피고 1.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심동섭, 임해성

변론종결 2022. 10. 18.

판결선고 2023. 2.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와 소외 ▽▽▽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제1 내지 22항 기재 각 이체일자에 체결된 각 이체금액에 관한 각 증여계약, 피고 □□□과 소외 ▽▽▽ 사이에 별지2 목록 순번 제1 내지 14항 기재 각 이체일자에 체결된 각 이체금액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는 58,0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은 42,148,9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와, 소외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제1 내지 16항 기재 각 이체일자에 체결된 각 이체금액에 관한 각 증여계약, 소외 주식회사 K 사이에 같은 목록 순번 제17 내지 22항 기재 각 이체일자에 체결된 각 이체금액에 관한 각 증여계약, 피고 □□□과, 소외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2 목록 순번 제1 내지 9항 기재 각 이체일자에 체결된 각 이체금액에 관한 각 증여계약, 소외 주식회사 K 사이에 같은 목록 순번 제10 내지 14항 기재 각 이체일자에 체결된 각 이체금액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는 58,0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은 42,148,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소외 ▽▽▽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개발, 주식회사 C개발엔건설, 주식회사 D개발엔건설), 주식회사 E개발(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상조, 주식회사 G개발, 주식회사 H골프),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 주식회사 C개발엔건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마을), 주식회사 M(이하 상기 회사들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회사들'이라 통칭하고, 상기 회사들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 ◇◇◇는 ▽▽▽의 법률상 배우자, 피고 □□□은 ▽▽▽의 자(子)이다.

한편 원고 ●●●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은 원고 A의 이사이며, 원고 ◎◎◎은 과거에 원고 A의의 이사로 재직했던 자이다.

나. ▽▽▽의 원고 ○○○, ◎◎◎에 대한 사기행위

1) ▽▽▽는 2013. 5.경 분양담당자인 ♡♡♡을 통해 원고 ◎◎◎에게 “E개발이 신축하여 분양을 추진하는 L1차 호텔 2층 상가 중 2구좌(6평)와 8층 상가 중 10구좌(30평)를 계약하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 상가 1평에 대한 즉시 수익금으로 1억 600만 원(2층 상가는 1구좌당 800만 원씩 1,600만 원, 8층 상가는 1구좌당 900만 원씩 9,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향후 상가를 운영해 주면서 연 12~13%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는 원고 ◎◎◎으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기존 채권자들인 기획부동산 수분양자들과 부동산 매수자금 대여자들 또는 투자자들에게 예전에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호텔 광고비 지출 및 회사 운영비 지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사업자금을 대부분 대출을 받아 급격한 자금경색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는 위와 같이 원고 ◎◎◎을 기망하여 원고 ◎◎◎으로부터 2013. 5. 28.부터 2013. 10. 31.까지 21회에 걸쳐 D마을 명의 농협계좌로 L1차 호텔 2층, 8층 상가분양금 명목으로

합계 242,000,000원¹⁾을 교부받았다.

2) 또한 ▽▽▽는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 ○○○을 기망하여, 원고 ○○○으로부터 2014. 3. 7.부터 2014. 10. 20.까지 3차례에 걸쳐 D마을 명의 농협계좌로 N2차 호텔 상가²⁾ 분양금 또는 지분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는 2016. 4.경 E개발 사무실에서, 위 ♡♡♡을 통해 원고 ○○○에게, “제주 **읍 **리 *****-, ****-, ***** 총 2,000평의 땅 위에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할 것이다.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전원주택단지 준공 즉시 1억 6,490만 원 상당의 전원주택 2채 (1채당 대지 80평, 복층구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는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세금 체납, 채무 과다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였고, 위 토지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원고 ○○○에게 약정한대로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는 위와 같이 원고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으로부터 전원주택 2채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M 명의 농협계좌로 1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원고 ●●●, A와 ▽▽▽ 등의 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 등

1) 원고 A는 2016. 10. 12.경 C개발앤건설, B(당시 상호: D개발앤건설), M, K(당시 상호: L), ▽▽▽, ▷▷▷(이하 '▽▽▽ 등'으로 통칭한다)와 ▽▽▽ 등에게 5억 원을 투자하고 2017. 4. 12.에 배당금 2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7억 5천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 등은 원고 A에게 같은 날 위 7억 5천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으며, 2016. 10. 13.경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O 작성 증서 2016년 제1970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 A와 ▽▽▽ 등은 2016. 11. 30.경 위 투자계약상 7억 5천만 원의 변제방법을 '과천시 **동 산 **-*-, *번지에 관하여 ♡♡♡ 본부를 포함한 모든 본부 총 매출의 30%씩 변제'하는 것에서

'C개발앤건설에서 시행하는 모든 분양물건에 대하여 ♀♀♀ 본부를 제외한 타 본부의 전체 매출액의 30%씩 변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 A는 ▽▽▽ 등을 상대로 '▽▽▽ 등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투자계약상 투자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다 갚는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2. 6. 20. 그 신청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차전183290), 이에 ▽▽▽, ▷▷▷만이 이의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2561), C개발앤건설, B, M, 신공항레즈던스에 대한 지급명령은 2022. 7. 27. 확정되었다.

2) 원고 ●●●은 2017. 4. 13.경 ▽▽▽ 등과, 원고 ●●●이 그 동안 ▽▽▽ 등에게 분양대금, 투자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3) 합계 1,013,517,763원을 ▽▽▽ 등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 하고, 변제기를 2017. 12. 31., 이자는 2017. 4. 30.부터 매월말일 11,303,316원으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등은 2017. 4. 14.경 원고 ●●●에게 '위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O 작성 증서 2017년 제450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관련 형사판결

▽▽▽는 위 나.항 기재 행위 등에 관하여 사기 등 죄로 기소되어 징역 8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1. 6. 선고 2018고단196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6609 판결), 이에 대한 ▽▽▽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7620 판결, 이하 ▽▽▽에 대한 위 확정된 유죄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마. 이 사건 회사들의 계좌이체

B와 K은 별지1,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들 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금원을

이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2, 15 내지 17,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주위적 청구

가) 원고 ○○○, ◎◎◎은 ▽▽▽에게 관련 형사사건 판결 기재와 같은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원고 ●●●, A는 ▽▽▽에게 각 공정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채권이 있다(피보전채권).

나) B와 K은 피고들에게 별지1, 2의 각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회사들의 행위는 사실상 ▽▽▽의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법인격 부인), 이는 ▽▽▽가 피고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청구

가) 원고 ●●●, A는 B, K에 각 공정증서 기재 채권이 있다(피보전채권).

나) 만약 B와 K의 행위를 ▽▽▽의 행위로 볼 수 없다면, B와 K이 피고들에게 별지1, 2의 각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이체한 것은 위 회사들이 피고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에 해당하고, 이체 당시 위 회사들은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계좌는 실질적으로 ▽▽▽가 관리하였고, ▽▽▽는 이체된 금원의 대부분을 이 사건 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체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이 이 사건 계좌에 이체된 금원 중 일부를 생활비, 월세 등으로 사용한 적은 있으나 피고들은 ▽▽▽와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이를 피고들에 대한 금전증여로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계좌에의 금원 이체가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두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가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사받을 당시 '피고 ◇◇◇에게 송금한 자금은 생활비조로 지급한 것이다. 그 중 피고 ◇◇◇가 6~7억 원 정도를 현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갑 제8호증 33면), 피고 □□□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중 “□□□ **대학교”, “□□□”, “□□□(◁▷)”등 피고 □□□이 사용한 듯한 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와 K 명의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피고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게 하려는 의사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 이체행위의 주체가 ▽▽▽인지, B와 K인지와 무관히 위 이체행위는 증여로 보기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이 ♡♡캐피탈, ♡♡카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이 사건 회사들에 이체해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회사들에서 피고 □□□에게 이체된 금원은 위 대출금의 이자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대체로 금원이 이체된 날로부터 수일이내에 대출이자가 변제되었다).

2)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가 2018. 10. 29.경 150,000,000원, 2018. 10. 31.경 20,000,000원, 2018. 11. 1.경 10,000,000원, 2018. 11. 20.경 5,000,000원을 I 계좌에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 ◇◇◇가 B, L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원을 다시 I에게 이체한 것이거나 피고 □□□과 마찬가지로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I에게 이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만약 후자일 경우 B, K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원은 피고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출이자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3) ▽▽▽는 수사 당시 '자신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피고 □□□ 명의의 계좌를 직접 사용하였고, 피고 □□□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자금은 자신의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갑 제8호증 33면), 부부는 경제생활공동체로서 편의상 부부 일방 명의의 계좌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서로 쉽게 금전이 오갈 수 있는 관계이므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가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의 수사기관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고 ◇◇◇가 이체받은 금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 ▽▽▽의 수사 당시 진술과 같이 피고 ◇◇◇가 이체된 금원의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이 특정되지 않을뿐더러, 이는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증여로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가 수사 당시 언급한 '현금'(갑 제8호증 33면) 역시 대체로 ▽▽▽의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기선 판사 현재언 판사 최윤영

별지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단1965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29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판결의 별지5 순번 1 내지 21번에 기재된 피해액의 합계는 242,000,000원이다.

2) 706호, 411호

3) 원고 ●●●이 그동안 지급한 금원의 세부내역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제4조 제2항 기재와 같다(다만, 동 조항 ㉔~㉕목에 기재된 금원은 관련 형사판결에 기재된 원고 ○○○의 피해액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